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5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김영식·한무경·서일준

조수진 · 김용판 · 김석기

성일종 · 구자근 · 유두현

임이자·조명희·김 웅

김미애 · 김예지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 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 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 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 라.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4조).
- 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 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 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 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사.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 아.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안 제9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 차.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안 제20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 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4조).
- 타.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함(안 제26조).
- 파.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 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라.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이하

-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 바. 마목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
- 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방 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

- 제4조(신고 및 현장조사) ①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 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

근지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시 조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 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게 제6조제2항의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 4.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인도
- 제6조(긴급잠정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잠정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잠정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잠 정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잠정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잠정조치 후 잠정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7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 잠정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6 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잠정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 거나 법원이 잠정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 잠정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 2.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판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잠 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 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 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후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9

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2조(항고) ① 제9조의 잠정조치에 있어서 그 결정(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②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 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17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 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 3.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4.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판사·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를 하였 거나 피해회복절차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2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 제20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1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20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 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 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20조제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 령"으로 본다.
- 제23조(다른 법률의 준용)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제55조의7부터 제5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본다.
- 제24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

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

- 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26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 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제28조(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

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 제29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가중처벌) ① 제2조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 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 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2.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2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제9조제1항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제1항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 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검사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

-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스토킹행위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